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5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양정숙·김승원·김경만

이은주 • 윤관석 • 노웅래

남인순 · 한준호 · 전용기

임종성·최종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거래)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취인이 착오송금을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많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 나.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과 구별하여 착오송금구제계정을 신설하고, 자금이 체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 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4).
- 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 라. 회수가능성을 감안한 채권매입, 소송제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하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구제

제24조의3제1항 중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구제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구제계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 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착오송금구제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착오송금구제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3.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 4.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39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3. 그 밖에 구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서 정하는 사항
- ④ 공사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 ⑤ 구제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9조의2 앞의 "제5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하고, 제39조의2를 제39조의4로 하며, 제5장(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5장 착오송금 피해구제

-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 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착오송금 구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 지방자치단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 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39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반 환채권 매입금액을 지급받은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오송금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전 1년 내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			
	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u><신 설></u>	10.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			
	<u>한다.</u>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제18조(업무의 범위)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신 설></u>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u>피해구제</u>			
7. 제1호부터 <u>제6호까지</u> 의 업무	7 <u>제6호까지 및</u>			

에 부대하는 업무

8. • 9. (생략)

② (생략)

제24조의3 (구분 회계처리) ① <u>예</u> 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한다.

- ② · ③ (생 략)
- ④ <u>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u>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 ⑤ · ⑥ (생략)

제26조(차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은행법」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 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한국은 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

세6오의2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 (구분 회계처리) ① <u>예</u>
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
송금구제계정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착오송금구제계정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차입)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또는
착오송금구제계정

한다)만 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u>제5호 및 제6호</u> 에 따른 업무의 수행
- 2. · 3. (생략)
- ② (생략)
- <신 설>

- -----.
- 1. -----<u>제5호, 제6호 및</u> 제6호의2----
 - 2.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제26조의4(착오송금구제계정 설 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구제를 위 하여 공사에 착오송금구제계정 (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3.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 4.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39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매입
 -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u><신</u> 설> <신 설>

<신 설>

- 3. 그 밖에 구제계정의 설치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④ 공사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준용한다.
- ⑤ 구제계정의 운영에 관하여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 착오송금 피해구제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 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 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 구제계정의 부담 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 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 한다.
-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착오송금 구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연합회·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수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 정보
-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 료
- ③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 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u>제6장 벌칙</u> <u>제39조의4</u> (현행 제39조의2와 같

<u>제5장 벌칙</u> 제39조의2 (생 략)

제413	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여	거느
하니	누에 해	당하는	자는	1년	(٥
하으	의 징역	또는	1천민	원 (기하
의	벌금에	처한디	- .		
1 •	2. (생	략)			
<u><신</u>	설>				

<u>ㅇ</u>)
제41조(벌칙)
1·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
법으로 제39조의2에 따른 부
당이득반환채권 매입금액을
지급받은 자